

제344회 국회 (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22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서면질의서】

○이명수 위원	2
○인재근 위원	4
○진선미 위원	13

【서면답변서】

○기획재정부	24
○행정자치부	49
○보건복지부	51
○고용노동부	64

* 서면질의서

이명수 위원

(총 1 면)

서면질의(이명수 의원)

○ 국무조정실

- 저출산 고령화 대책 평가 결과(2013~2015년, 평가조정관실)
- 국무조정실내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전담 부서 신설 방안
(필요성, 설치내용 등)

~~○ 감사원~~ *청리*

~~- 2012~2015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감사결과(요지)~~

○ 기획재정부(세제실)

- 저출산 고령화 관련 각종 세법 개정방향 및 개정방안

○ 보건복지부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주요기록 사항(2013~2015,
회의내용 등)
- 1~2차 저출산고령사회 투자 대비 실적

* 서면질의서

인재근 위원

(총 8 면)

기획재정부

< 난임부부 지원 개선방안 >

- 현재 복지부에서 난임시술 지원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해당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년 10월까지 출산계획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득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 ①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의 취지에 맞게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난임시술 지원이 당장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 위해선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요수입니다. 난임시술 지원 재정 투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모성보호급여 관련 >

-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성보호급여로 인해 실업급여제정의 적립배율이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고 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출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① 결국 저출산 대책을 세울수록 실업급여의 재정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증액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 조세 개편을 통한 출산을 제고 >

-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이를 위한 조세 구조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① 지금처럼 지출의 긴축만 고집해선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다자녀 우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②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든 소득세 감면이든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일 가정 양립 실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확대 >

- 최근 깔창 생리대 사건 등으로 인해 여성 생활용품의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기저귀, 생리대 등을 포함한 각종 생활용품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① 기저귀, 생리대 같은 생활 필수용품의 지원은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자체 출산율 관리해야 >

- 행자부에서 제출한 ‘2017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인력대체율’,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경단녀 취업지원률’ 등 여러 지표가 있었지만 정작 출산율의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평가’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출생 관련 통계 지표를 살펴보건 하지만 해당 지표는 정성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① 따라서 실제로 각 지자체가 출산율을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해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고용 불안 >

- ‘금복주’라는 회사에서의 부당한 여성 고용환경이 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 ① 2014년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 956만 명중 비취업여성이 389만 명인데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8만 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금복주와 같이 회사를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당연시되는 문화에는 정부의 근로감독 등의 적극적인 지도, 감시가 부족했던 점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② 여성의 취업률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시간제 일자리라는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70%가량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 고용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제도의 낮은 활용성 관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40%가 결혼과 출산시점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활용률도 직종별, 직장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경우,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민간부문, 판매직 서비스직의 여성들보다 제도 활용률이 높았습니다.

① 예전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늘었지만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가 양립제도의 보편적인 확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현재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제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②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은 영세사업장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비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 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최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① 예전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늘었지만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 기존청년취업사업에서 정부가 기업에 줬던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금 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주도록 해 기업들의 참여의지가 꺾였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도설계의 오류라는 비판인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②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성패의 1차 관문은 참여기업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여기업을 늘릴 유인책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③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성패의 2차 관문은 청년들의 참여입니다.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도 저조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서면질의서

진선미 위원

(총 10 면)

16072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책 제시돼야

진선미 의원

○ 기재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차관님, 기재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 투자방향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나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 투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예산배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과연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정책’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투자,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너무 인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분담과 맞춤형 보육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 ‘누리과정’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은 국가가 완전책임지겠다’고 여러번 말해 왔습니다.

-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정부는 ‘작년 10월에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총선과정에서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현수막이 모든 지역에 붙여졌습니다. 차관님,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이 어디에 반영되어 교부되었다는 것이

1)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없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됨.

죠?

- [예상답변: 보통교부금에 포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 중 ‘보통교부금’은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인데, 교부금 총액을 시도교육청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기준을 잡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키고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수요액에 산정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 누리과정예산 4조원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냈다면, 실제 교육청에 교부된 교부금이 크게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4~15년에 교부금이 줄어들었고, 2013년에 비해 올해는 약 2천억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증가 등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조4,472억원	41조600억원	40조8,681억원	39조4,056억원	41조2,716억원
17개 시도교육청 지방채 규모	2조769억원	2조9,697억원	4조7,187억원	10조7,164억원	14조3,668억원

-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합당한 재원을 지자체나 교육청으로 줘야 합당한 거죠? 2006년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사업’을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19.4%인 교부세율을 0.6%(약 8천억원) 올렸고, 2010년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율을 0.27% 올려 현재 20.27%가 된 것입니다.

○ 정부말대로 누리과정예산 4조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했다면, 교부세율을 올려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보육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교육청에 예산부담 책임만 떠넘기기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 정부가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하면서 시도교육청 지방채 규모는 올해 14조4천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났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떠앉으면서 초·중교육 여건이 악화

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한해에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부담으로 환경개선사업비,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학교운영경비 등 교육 필수경비에서 약 1조3천억원을 삭감해야만 했고, 교육의 핵심인 교수 학습활동지원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기존 시설유지에만 1조2천억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한푼도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육 대란을 넘어서 교육대란이라 할 것입니다.

- 차관님,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땀질식으로 매워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져가던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인상하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재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이번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 현재 저출산·고령화추세의 가속화는 이미 인구구조상 심각한 국가위기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산·보육·교육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이념적 논쟁’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대상으로 만드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교육만큼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160721-22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대상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맞벌이가정 어린이집과 학교 방과후 양육 공백 시간 발생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사적 채용에도 정부차원의 관리 및 소득공제 필요

진선미 의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의 출산과 산후조리, 어린이집, 학부모로 이어지는 양육과정에서 공적 도움이나 지원 받기 어려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부족으로 인해 사적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를 해도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불일치로 인해 양육시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육을 담당하는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 사적 채용이 늘어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오후 2시,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4시경이면 정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통합 보육이 이뤄지고 있음. 또 초등학교의 경우도 저학년의 경우 오후 1시에 학교수업이 종료됨.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으로 퇴근시간까지의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은 전무함.

○ 특히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서 돌봄서비스와 방과후 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에 따라 활용할수 있음. 소득으로 분류하는 보육 서비스 대상에 맞벌이의 경우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사적 양육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이런 사적 보육을 담당하는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 하원도우미 등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민간부문에만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관련 일자리 연결 사이트만도 수십개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민간 분야의 베이비시터와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교육과 관리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족함.

○ 사적 채용의 베이비시터와 가사 도우미 급여의 경우 도시와 지역,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평균적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7천원에서 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음. 또 하루 4-5시간 주5일 근무할 경우 월급제로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영아(만 1세까지)-젖먹이 종일 도우미의 경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기도 함.

- 사적 채용으로 인해 신원과 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베이비시터 아동 학대’ 사건 등 발생하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결국은 경력단절의 계기가 되기도 함.

- 또 저학력, 비경력, 저소득, 중년, 노인 등 여성들에게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 여성 일자리 확대에 좋은 조건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함.

○ 정부 차원의 보육과 돌봄시스템 영역에 사적 채용 부분도 정부정책이 수립될 경우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 등록제 등을 통해 적절한 교육과 최저 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될수 있음.

○ 특히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채용에 대해 소득공제 세제혜택 제도가 도입된다면 맞벌이 가정에 대한 자녀 돌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고, 또 가사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경우 민간 영역의 사적 채용 전체적 현황 파악과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및 유형별 법적 보장 장치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 제안

○ 기획재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베이비시터 등 사적 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 제안.

20160721-22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대상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공산후조리원,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지 말고 정부차원 확대해야

진선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만족도 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 7일 전라남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승인된 해남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사용후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 189명중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요금은 154만 원으로 인근 대도시 보다 30% 가량 낮고, 장애인 산모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가정은 70% 감면 혜택이 있어 갈수록 사용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에서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도 개원 3년만에 첫 흑자를 기록하면서 갈수록 이용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최근 3년간 859명의 산모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장애 등 이용료 50% 감면을 받은 대상이 435명에 이르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정착과 운영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책으로 제출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난임 등 임신과 출산 지원, 맞춤형 보육 일가정 양립등 출산 장려 정책들이 제시되어있습니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과 고위험산모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배치 되어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출산 후 산후 조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와 관련해서는 가정 방문형 산후도우미를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평균 가구소득이 80%이하이거나 특수계층에 해당될 때 저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은 휴무로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 도입후 10년동안 이용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5년 출생아수 43만 8천7백, 이용자가 산모 7만8천468명 17.9%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국비 333억원이 소요됐고, 지방비는 159억이 집행)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산모들이 정부의 산후 도우미 제도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어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 확대는 물론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의 경우 가족들만의 공간에 하루 종일 낯선 사람과 지내야 하는 불편함과 주말에는 도우미의 손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한 도움이 필요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아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2-3주를 지낸 이후에 정부의 산후도우미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이 국회에 통과했으나 여전히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만 한정해서 설치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용하려면 출산은 출산 병동이 있는 도시에서, 산후조리는 군단위 지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산모 산후조리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촌지역 군단위의 경우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의령군, 고성군, 산청군, 함안군, 창녕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함평군, 화순군 등 전국 137개 이상의 군에 산부인과가 아예 없습니다. 또 일부 군 단위에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검진만 가능하고 실제 출산은 시 정도의 규모에 병원이 몰려있어서, 실질적으로 민간 산후 조리원이 있는 곳, 실제 출산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다라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 입니다.

16072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현실적인 양육비 보장돼야

진선미 의원

-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노동조건, 즉 노동안정성과 임금의 문제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정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어떤 지원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합니다.
 -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떨어져, 그 OECD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 체감하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 장관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2230원입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른 사유로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달 135만원으로 아이를 기르고, 미래에 들어갈 투자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모델을 적용해 추정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인 2명이 맞벌이를 해 아이 1명을 기르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7,466원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인 2명이 아이 2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8,733원이 되어야 하구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 1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11,364원, 2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13,128원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지금 최저임금 체계는 노동자가 벌어서 자기 한 몸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출산 양육을 위한 비용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출산양육 비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7500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들이 182만 명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이들이 222만 명입니다. 최저임금을 아주 조금 상회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생계가 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평생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사회의 정규직 평생직장과 연공서열제는 사회복지가 부족하던 시절에,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큰 문제만 없으면 임금이 올라갔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아지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애를 낳아 기를 수 있었죠. 정규직 연공서열제도 없어진 현재 이에 대신한 사회 전체적 사회안전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임금과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성실히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을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임금과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상답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

○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일자리 자체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 정부의 노동개혁은 더 불안정하고, 더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직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한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

데,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비용을 적게 들이는 개혁방안입니다.

- 정부의 노동개혁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어쨌든 인력을 충원하겠죠. 그런데 불안정한 파견 환경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으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0년을 전후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출산도 늘어날 수 있고,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복지재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저임금 노동자로 채운다면, 기업의 당장의 이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국민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다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명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소득세제과장 이용주 044-215-4210)

저출산 고령화 관련 각종 세법 개정방향 및 개정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출산 지원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 자녀의 학교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며,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늘릴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의 1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앞으로도 재정여건, 면세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 관련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재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제훈, 044-215-7530)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추가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임시술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상원 044-215-7230)

모성보호급여로 인해 실업급여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01.11월 모성보호급여 시행 이후 재원분담을 위해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전출금(단위:억원): (12) 150 → (13) 250 → (14) 350 → (15) 700

○ 향후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 실업급여계정 지출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 '11년 12.2→'12년 13.7→'13년 14.3→'14년 14.1→'15년 16.1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험료율 인상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인세제과장 조만희 044-215-4220)

금융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에 대한 기재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그 간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대기업 실효세율이 상승하고 법인세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12년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하여 **17.6%('10년)에서 19.2%('15년)로** 상승하였으며,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 '15년 법인세수는 **45조원**(전년대비 +2.3조원), '16년 5월까지의 법인세수 **27.1조원**(전년대비 +5.5조원)입니다.
- 금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등으로 대기업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다만, 법인세율 인상 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런 세수증가 유도가 바람직합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044-215-4130)

“일·가정양립 실천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해 세제지원 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중소기업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50% → 100%)하고,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의 1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 재취직 → (개정)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직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기저귀, 생리대 같은 생활 필수용품의 지원은 출산을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생리대와 같은 생활 필수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산출시 고려되어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여가부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사업, 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개별 사업들을 통해 추가적인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재정 투입 확대 여부는 기존 지원과의 중복성, 사업 효율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 향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진선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대표적 정책 및 투자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 투자방향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해나가고 있으며,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해당 기본계획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정부는 '16년 예산 편성시에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보육·교육·주거 및 일가정양립 등 출산·양육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했으며,
 - 보육료(3.1조원), 국가장학금(3.9조), 행복주택(1.3조), 육아휴직 수당(0.7조) 등이 대표적 정책입니다.
 -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의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화 대응은 노인소득보전 및 자립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 기초연금(7.9조), 장기요양보험(4.3조, '15년 결산기준), 노인 일자리(0.4조) 등이 대표적 정책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예산과장 황순관 044-215-7250)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이 어디에 반영되어 교부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 교육부에서 '16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기준재정 수요액 유아교육비 지원 항목에 따라,
- 시도별 원아 수를 기준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산정하여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예산과장 황순관 044-215-7250)

누리과정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키고,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등은 수요액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관리 및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으로
- 요청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예산과장 황순관 044-215-7250)

누리과정 예산의 별도 국고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별도 국고로 편성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누리과정은 '12년 도입 당시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 누리과정 편성에 쓰이는 교부금도 교육청 자체재원이 아닌 국세수입의 **20%** 상당(내국세 20.27% +교육세 전액)의 국가재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부율 인상은 교육 최종수혜자인 초중등 학생수 감소,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시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복지지출 등 경직성 경비 확대 등에 따른 중앙정부재정의 어려움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3조원 규모의 이·불용액 축소 및 소규모 학교 적정관리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예산과장 황순관 044-215-7250)

금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법령상 의무 사항으로 일부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추경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곤란합니다.
- 더구나 금번 추경시 추가 징수된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1.9조원을 증액교부 함으로서 누리과정 편성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여력은 크게 확충될 전망입니다.
- 지난 5월24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
- 이에 따라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득세제과장 이용주 044-215-4210)

베이비시터 등 사적 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현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 중 입니다.

- 저소득 가구(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자녀 수 등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 유치원 등 교육비를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적 고용계약을 통한 베이비시터 비용 등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부모 등 친족에게 육아를 맡기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사회전략팀장 김명선, 044-215-493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확대와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확대는 민간산후조리원의 수용률*, 안전문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재 민간산후조리원 610개소의 입실율은 66.9%

** 산후조리원 감염사례건수 : ('13) 49건 → ('14) 88건 → ('15) 414건

***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보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모자보건법 개정)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김학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복지경제과장 서지원 044-215-4970)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을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 시설」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 (김학용 의원안) 독거노인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예: 경기 카네이션하우스)

□ 경기도는 기존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의
숙식·여가활용·공동작업에 사용하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중

* 노인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하나 지원대상(독거노인 vs 기초수급노인 등),
이용방법(필요시 vs 상시거주), 지원활동(주거·여가혼합 vs 주거) 등에서 차이

○ 카네이션하우스는 주거와 여가기능을 혼합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규정 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

○ 개정안은 위와 같은 형태의 독거노인 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
시설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

□ 인구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필요성이 증대

* ('00)54만명 → ('10)106만명 → ('20)175만명 → ('30)282만명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다만, 지원대상의 특성상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운영기준의 설정과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독거노인 관련 복지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

* 복지부는 지자체의 공동생활홈 실태파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6.5월~)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복지경제과장 서지원 044-215-4970)

은퇴 이후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 연금수급연령 : '12년 60세 → '14년 61세 → '34년 65세

□ 60세 정년 법제화,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을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을 추진 중

○ '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간주)

* '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적용, '17년부터 300이하로 확대 → '18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16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16. 7월, 31개소) 등을 통해 **재취업 활성화** 추진

* 1:1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등 제공

○ '14년부터 **60세** 이상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ETC)**를 지급하여 근로빈곤 노인계층 소득 지원도 병행('16년 50세, '17년 40세)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추진 중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14.8월)을 통해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지속 마련 중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400→700만원, '15년 시행), 퇴직연금-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허용('16년 시행) 등

○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연금포털을 통한 개인별 연금정보 제공으로 **맞춤형 노후 설계** 지원

* (당초)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 → ('16년)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미래사회전략팀장 김명선 044-215-4930)

**제3차 기본계획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미시적
보완 필요사항 발굴**

-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15.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중임
 - 시행계획 수립시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발굴하여 시행계획 반영하고 있음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최교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최교일 의원(새누리당)

(미래사회전략팀장 김명선 044-215-4930)

프랑스 다자녀 혜택카드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 여부

□ 프랑스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정 카드’를 지급

- 18세미만 3자녀 이상 둔 경우 ‘다자녀가정 카드’를 통해 생필품 구입이 가능하고, 철도요금·문화생활비 할인 등 제공

□ 현재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중*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정책 :

- ①교육비지원(국가장학금), ②주택구입·전세자금 금리 우대,
- ③주택특별공급, ④자동차 취득세·전기료·도시가스 등 할인

- 다자녀 카드 도입 등 추가적인 지원정책은 재정의 출산을 제고 효과를 감안하여,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검토할 필요

※ 참고로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정책을 시행중*

- * (예시)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대중교통요금 할인, 유아용품 할인 등), 부산 ‘가족사랑카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권미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상세한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재원조달방안은 국가재정운영 계획 및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재원조달·배분계획하에 결정하고 있으며,
 - 매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시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중
- 다만, 정부가 특정 지출과 재원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출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어 별도의 기금·특별회계 설치에 신중한 검토 필요

* 서면답변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인재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를 정량 지표화 하여 객관적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자부의 견해는?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시책개발 노력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 지표도 필요
- '18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시 기존 지표 외에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반영하겠음
 - 10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지표개발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임

* 서면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명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명수 의원>

인구정책총괄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주요기록 사항(2013~2015,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주요기록 사항은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록(2013~2015)

첨 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록(2013~2015)****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록****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3.1.25(금).10:00~11:30, 청와대 본관

☐ 참석 : 위원장(대통령), 위원 24명

☐ 안건

①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안)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복지부소속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격상('12.5.23)

②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경과 및 평가보고

2. 주요결과

☐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3. 세부 내용

☐ 저출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이 가정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어르신 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이 필요

☐ 고령화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녹색생활, 귀농귀촌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 ☐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실버·출산산업 등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
-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
- ☐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경제 및 복지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확실한 위기 반전을 위해 재정투자확대가 필요

☐ 위원장 마무리 발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에 의의가 있고, 민간위원 위촉을 잘했다고 생각되며,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동양사회의 가족관을 복원시켜야 하며, 저출산고령화(인구정책)이 국정과제의 높은 순위에 있음. 2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 첫째, 남북통일과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단일민족에서 다인종 시대로 변화 하는 것(150만명의 외국인 거주). 머지않아 인구의 10%가 되며, 우리사회가 다문화 인종사회가 될 것. 이런 사항을 전제로 고려해야 함.
 -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격상되었는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기 바람. 나는 소시민으로 고령사회에 들어감. 자녀들이 아이들을 2명씩 낳았는데, 이처럼 각자 실천해야 인구가 늘어날 것임. 오늘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발족하고, 정부 주요장관들이 다 참석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회의였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 서면심의

☐ 일시 : '13.3.18.~3.22

☐ 안전

- [심의]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안)
- [심의]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계획(안)
- [심의]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2.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 서면심의

☐ 일시 : '14.5.1.~5.12

☐ 안전

- [심의]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안)
- [심의]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계획(안)
- [심의]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2.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 일 시 : '15. 2. 6(금) 10:10~12:20

▶ 참석자 : 대통령 외 70여명

(위원 32명) 대통령, 정부위원(14), 민간위원(8), 정책운영위원회 위원(8), 운영지원단장 (외부인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제5정책조정위원장·수석전문위원, 주한 스웨덴 대사, 진주시장,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보건복지·여성가족비서관 등

1. 위원장 모두말씀

- 저출산·고령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인구보너스가 끝날 것이며, 향후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될 것
 - '5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3차계획 수립에 임할 필요
-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극복의 핵심은 4가지
 - 기존 대책이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
 -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극복 가능하므로, 토론회·공청회 등 현장을 부지런히 방문
 - 출산장려, 고령자 복지 수준을 넘어, 사회구조·문화를 바꾸는 폭넓은 시야에서 접근
 -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위기roman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

2. 안건보고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3. 의 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4. 위원장 마무리 말씀

- 저출산 대책의 목표를 ‘일자리’, ‘여성의 일-가정 양립’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
- 대책수립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품을 팔 것
 - 현장에서 일자리를 고민하는 여성, 독거노인, 청년들의 고민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미래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과제’
 -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연내 시행하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 ‘3차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3차계획을 충실히 잘 준비한다면 **2016년**을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
 -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국민 모두가 의지를 갖고 동참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요 : 서면심의

☐ 일시 : ‘15.5.18.~5.22

☐ 안전

- [심의]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 [심의] 2013년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 및 2014년 시행계획 성과평가 계획(안)

2.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

▶ 일 시 : '15. 12. 10(목) 10:00~11:30

▶ 참석자 : 대통령 외 130여명

(위원 46명) 대통령, 정부위원(14), 민간위원(9), 정책운영위원회 위원(13), 분과위원회 위원(8명), 운영지원단장

(외부인사)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국책연구기관장, 지자체·종교계 대표, 토론참여자 및 정책수혜자 등 일반국민

(관계부처)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장(6)

(청와대) 정책조정·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비서관 등

1. 회의내용

○ 기본계획 시안보고

- (총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내용(보건복지부장관)
- (주제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추진방향(국토교통부장관)
- (주제2) 청년고용 및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방향(고용노동부장관)
- (주제3) 달라지는 우리미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토론

- (토론주제 1)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
- (토론주제 2)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
- (토론주제 3) 지역·시민사회 참여 문화인식 개선

○ 의결 및 대통령 마무리 말씀

2. 의결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3. 위원장 말씀

〈 모두말씀 〉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 극복을 위하여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을 당부
-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바,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목돈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야 함
-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선진국 수준의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바꿔야 함
- 고령화의 문제도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노년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과제임
-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 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임

〈 마무리말씀 〉

-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3차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행여부를 점검해야 함을 당부
- 과제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
- 정부의 주요한 제도나 정책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평가하고 출산율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시행 전에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

- 이러한 일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인구위기는 직시하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브릿지 플랜 2020’을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

< 이명수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2. 1~2차 저출산·고령사회 투자 대비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1~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투입된 재정 규모는 전체 약 153조원으로 1차는 42.2조원, 2차는 110.4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1차(2006~2010) 대책 투입 예산 : 저출산 19.7조원, 고령화 22.5조원,
2차(2011~2015) 대책 투입 예산 : 저출산 61조원, 고령화 49.4조원

- **그간 국가책임보육 실현 등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 쇼크를 극복하고, 1.2명 수준으로 출산율을 일부 회복하였으며,**

* 합계출산율 추이 : ('05) 1.08 → ('10) 1.23 → ('15) 1.24

- 기초연금 도입(2014), 60세 전년 법제화(2013) 등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였고, 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치매 관리법 제정(2012) 등 노인 돌봄·요양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그러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 평균 여성초혼연령 : ('05) 27.7세, ('08) 28.3세, ('10) 28.9세, ('12) 29.4세, ('15) 30세

*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 : ('05) 29.08세, ('08) 29.60세, ('10) 30.10세, ('12) 30.50세, ('15) 31.21세

- 여전히 높은 노후빈곤율('15, 49.6%),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13, 7.94세), 높은 노인자살율('14, 19% 차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종합적·구조적 접근하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용·주거 등 만혼·비혼대책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 고령화 대응을 위해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 및 생산인구 감소 대비를 위한 고용과 산업의 구조개편을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명수 의원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3. 1~2차 저출산·고령사회 투자 대비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단일 과제로 삼아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대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이명수 의원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4. 국무조정실 내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전담 부서 신설 방안 (필요성, 설치내용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16.7월에는 복지부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분석평가과(7명)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임
- ☐ 국무조정실에서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서면답변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재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인재근 의원(서면질의서)

<여성고용 불안>

- '금복주'라는 회사에서의 부당한 여성 고용환경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① **2014년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 956만명 중 비취업 여성이 389만명인데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8만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금복주와 같이 회사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당연시되는 문화에는 정부의 근로감독 등의 적극적인 지도, 감시가 부족했던 점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국민행복카드 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음(금년 총 500개소 목표)

* 취약사업장 유형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특히 하반기에는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 목표 500개소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

-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임신한 근로자와 그 사업장에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5.20~)하여, 임신·출산 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음

*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송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5급 김현민	연락처	044-202-7471
------	---------	-----	--------	-----	--------------

② 여성의 취업률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시간제 일자리라는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70% 가량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 고용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부가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자발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차별이 없는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임

□ 이를 위해, ①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최저임금 130% 이상,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무기계약)된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한하여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건강, 학업 등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임금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출지원 근로자 임금(시간급): ('14) 10,568원 → ('15) 11,594원 <주휴 미포함>
▲전체 시간제 근로자 임금(시간급): ('14) 8,197원 → ('15) 8,286원 <주휴 미포함>

- 또한, 최근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건강 등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중점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현재 월 최대 40만원 → 60만원), 도입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홍보·컨설팅 등을 통해 확산 추진 중
- 앞으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되면 서도 근로시간이 유연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
 - 여성뿐만 아니라 전 생애 주기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겠음

담당부서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담당자	5급 백영식	연락처	044-202-7503
------	---------------	-----	--------	-----	--------------

<일·가정 양립제도의 낮은 활용성 관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40%**가 결혼과 출산시점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활용률도 직종별, 직장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경우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민간부문 판매직 서비스직의 여성들보다 제도 활용률이 높았습니다.

- ① 예전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늘었지만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군에 있는 많은 분들의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보편적인 확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

- 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이 폭넓게 존재
- ② 근로자는 동료와 사업주 눈치를 보는 일명 ‘사내 눈치법’ 때문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용을 주저하고 더 나아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1) 최근 대한상의 조사처럼 일·가정 양립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속속 나타나고 있음

<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

- * 대한상의 조사('14.10월) 결과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70%가 피크타임대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
- * 중소기업체(프론틱)는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시간당 생산성 68% 증가, 20여명 고용을 창출

- 따라서 우리부는 일·가정양립이 근로자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혁신임을 사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 중앙-지방단위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일·가정 양립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스스로 추진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

<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 **(중앙)** 고용부차관(주재), 기재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국장, 경제5단체 본부장(상무), 여성경제인단체장 및 민간전문가('16.3월~, 분기 1회)
- **(지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주관으로 관내 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새일센터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율구성('16.6월~, 월 1회)

- (2) 근로자가 육아 휴직·시간선택제 등 모성보호 제도 활용시 상사나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
-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수조사('16.4월~6월) 결과를 활용하여 원하는 공무원·교사·근로자 등 모든 직원들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등을 맘껏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민간 위탁기관(대체인력뱅크) 등이 협업하여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필요한 대체인력을 즉각 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음
- 또한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의 근로자 정보를 연계하여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적발·계도해 나가겠음

②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은 영세사업장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늘리고, 장기적으론 비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 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추진 중임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등

○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전업주부까지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 협의 등 향후 면밀한 검토 필요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4급 이재국	연락처	044-202-7473
------	---------	-----	--------	-----	--------------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① 기업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주도록 해 기업들의 참여의지가 꺾였다는 지적과 제도설계 오류라는 비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 ②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기업을 늘릴 대책은?
- ③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고용노동부 방안은?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인턴제의 사업주 중심·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자 중심·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개편,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동 제도에 따라, 기업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중 일부(2년간 390만원 중 300만원)를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하게 되므로 기업이 실제 받는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은 있으나,
 - 이는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업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은 인재채용,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이라는 상호 **win-win**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임
- 현재 사업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며,
 - 그간 기업이 적극적·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 ▲인턴 직접 선발 허용, ▲인위적감원 기준 완화, ▲인턴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16.7.25.)하였고,
 - 이에 기업 및 청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담당부서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5급 장은미	연락처	044-202-7495
------	---------	-----	--------	-----	--------------

* 서면답변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진선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진선미 의원(서면질의서, 더민주)

1.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임금과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 근로자들의 실질임금과 고용안정성이 제고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함
 - 우리 노동시장은 평생직장, 연공서열제하에서 높은 임금, 고용안정 혜택을 받고 있는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그렇지 못한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양분되어 있음
 - 저성장,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평생직장과 연공서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정부의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 근본적인 해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격차를 해소하여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부문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끌어올리고
 - 격차를 야기하고 외주·하도급 사용을 확대하게 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임(노동개혁)
- ☐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이 추진된다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청년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기업의 정규직 고용유인이 제고되는 등 우리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함

담당부서	노사협력 정책과	담당자	4.5급 최윤미	연락처	044-202-7592
------	-------------	-----	-------------	-----	--------------

2 정부의 노동개혁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인력을 충원하겠죠. 그런데 불안정한 파견 환경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으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개혁은 청년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직접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확대되고 청년들이 원활히 결혼, 출산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 노동개혁으로 파견이 확대되고 해고가 쉬워져서 더 불안정하고 더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법안은 55세 이상 중장년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파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장년층에게 용역 근로나 영세자영업보다 임금, 고용안정이 높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 공정인사 지침은 통상해고는 법과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담당부서	노사협력 정책과	담당자	4.5급 최윤미	연락처	044-202-7592
------	-------------	-----	-------------	-----	--------------